

가정용 수도 미납 및 수도 단수 통지서

본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를 기준으로 리오 비스타 수도국(‘시’)은 위에 기재되어 있는 계정에서 지불 예정인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귀하의 계정에 상하수도 요금의 10%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되었으며, 현재 납부 대상 금액은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

위 주소에 대한 시의 단수 조치를 피하려면, 납부 대금을 송금하시거나 본 통지서 수령 후 60 일 이내에 시에 연락하여 할부 상환이나 청구액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시는 **본 통지서 발송 후 61 일째 되는 날 오전 10 시** 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합니다.

단수 후 수도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기를 원할 경우, 시에서는 연체 대금 전액 납부와 추가적으로 \$25.00 의 재연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.

납부 정보

- 직접 납부 - 1 Main Street, Rio Vista, California 94571 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시에서는 직접 납부 시 현금, 수표 또는 우편환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 카드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해 주십시오.
- 전화 납부 - 수신자 부담 전화 (844) 446-6486 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르십시오.
위에 기재되어 있는 계정 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.
- 온라인 납부 - <https://riovca.aquahawk.us/login> 을 방문하여 납부 포털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이전에 포털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포털을 통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.

청구서 검토 또는 이의 제기 요청

시 정책에 따라 시는 고객에게 가정용 수도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합니다. 귀하는 리오 비스타 지방자치법령 제 13.20.150 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본 통지서 및 연체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 절차 및 가정용 수도 단수 조치를 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려면 공공사업부 과장(707-374-6451, 내선: 1116)에게 문의하십시오.

할부 상환 또는 청구액 감면 신청

귀하는 단수를 피할 수 있는 납부 유예, 감면 또는 대체 납부 일정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. 해당 감면 또는 분할 납부를 청원하시려면 위 주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시 재정과장(707-374-6311)과 전화로 상담하고,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1. 납부 유예 계획 - 납부 유예 계획은 고객이 2 회 이상의 청구 주기 내에 계정의 연체 금액을 해소하도록 마련된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납부 유예 계획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납부 유예 계획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2. 납부 감면 계획 -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CalWORKs, CalFresh, 일반 보조, Medi-Cal, 생활보조금(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, SSI)/주 생활 보조 프로그램(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)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, 영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현재 수급 중임을 보여주어 지불 불능을 입증하거나 고객이 연 가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% 미만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납부 감면 계획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, 시는 납부할 금액을 감면하거나 10% 이자를 면제하지만, 이는 12 개월마다 한 번만 적용됩니다.
3. 대체 납부 일정 - 시는 고객의 가정용 수도 요금을 균등 월납 요금으로 분할하거나, 시 재정과장이나 담당자가 개별 사례의 상황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대체 납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납부 계획 시행 후의 서비스 중단

귀하와 시가 납부 유예, 감면, 또는 대체 일정에 동의하는 경우, 귀하가 계약서를 준수하고 이후의 모든 수도 요금을 적시에 납부하는 한 수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됩니다.

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60 일 이상 정기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시는 미납을 통지하고 해당 통지서를 위에 기재된 서비스 주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한 후 최소 5 일(영업일 기준) 이후 단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임차인에 대한 통지

주 법에 따라 임차인은 위에 기재된 미납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의 직접 고객 자격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.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리오 비스타 수도국(주소: 1 Main Street, Rio Vista, California, 94571)으로 연락하시거나, 시 공공사업부 과장(707-374-6451, 내선: 1116)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